

어린이 완구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책의 현황분석

천경희(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겸임교수)

손상희(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교수)

I. 어린의 완구의 위해 문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간 어린이사용 완구, 인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는 2005년 356건, 2006년 386건, 2007년 5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캐릭터 상품시장의 확대와 어린이 지능개발, 조기교육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완구류가 개발 및 제조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함유, 미흡한 품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완구 사용 중 위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7년 10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마텔(Mattel Inc.)사가 “페인트의 납 함량 기준치 초과”와 “삼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중국산 완구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이후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어린이 용품(완구, 턱받이, 의류 등)의 대규모 리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¹⁾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완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완구는 전 세계 완구시장의 80%²⁾를 차지하고 생산업체도 1만개를 넘어 전 세계의 대형 완구회사에 납품되고 있으나 품질과 안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는 2007년 6월 1일부터 이동보조기구, 전동완구, 플라스틱완구,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OOC인증(강제성 인증)을 전면 시행하고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완구에 대한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수립(06년 5월)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사업’으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 물질이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2008. 5. 환경부 보도자료). 어린이 장난감,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높게 노출되었으며 어린이 장신구 등 일부에서 허용수준 이상의 납이 검출되었고 목재완구에서는 허용수준 이내이나 납, 비름, 크롬 등이 노출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는 2000년 말 현재 약 1,023명으로 지난 80년 1,300만 명, 90년의 1,097만 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 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는 것과 달리 어린이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어린이 산업의 대표품목인 완구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리 이상 증가하고 있다. 완구는 어린이들의 단순한 놀이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성장발육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교

육용으로서의 완구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³⁾ 어린이 완구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 완구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외국(미국과 EU을 중심으로)에서 실행되고 있는 완구의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완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완구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책

정부는 제81회 어린이날에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산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운동화, 어린이용 안전모, 레이저 장난감 등 9개 품목을 새로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2004년 12월 9일부터 적용)하고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 제도(2005년 10월 22일부터 적용)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해왔다.⁴⁾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준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물품 및 용역의 성분, 함량, 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둘째, 물품 및 용역의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셋째,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소비자기본법 제7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한 장으로 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안전조치, 위해정보의 수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한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⁵⁾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은 각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 어린이 완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에서 다루고 있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우리나라 완구에 대한 안전관리는 2005년 12월 23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어린이용 공산품 및 품질 성능이 저하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작동완구 및 유아용 딸랑이, 빡빡이(squeeze toy),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그밖의 비작동 완구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⁶⁾

-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의 정의(법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 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2005년 전면 개정되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2007 년 3월 24일 이후 제조, 수입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함
- 완구 등 47품목
 - * 비비탄총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됨
-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이 신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 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율안전 확인 표시 등(동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 확인 대상공산품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해야 함
- 판매사용 등의 금지(동법 제21조)
 -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상 공산품 중 자율안전 확인 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 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 개선, 수거, 파기 명령 등(동법 제31조 제2항)
 - 해당 공산품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또는 자율 안전 확인 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 개선, 수거 또는 파 기를 명할 수 있음⁷⁾

③ 관세법

완구 중 작동완구(전기, 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한함)는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 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 입 전 지정기관을 통해 자율안전 확인 과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작동완구⁸⁾의 안전성에 대한 수입단계에서의 확인과정은 없음

4) 자율안전 확인 안전 부속서 3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4호) (2007. 1. 24)

○ 완구의 안전검사 및 품질 안전 표시

- 완구란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완구는 크게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로 구분된다. 총 전완구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로 본다.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 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14 세는 만 14 세까지를, 18 개월은 만 18 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 총 9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일반 - 용어, 표장, 표시 등
-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 제3부 자연성
- 제4부 유해원소 용출
- 제5부 유아용 실내그네
- 제6부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활동 완구
- 제7부 유기 화학 물질 - 요구사항
- 제8부 유기 화학 물질 - 시료의 준비와 추출
- 제9부 유기 화학 물질 - 분석 방법

2 소비자안전 관련 기구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관리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관은 없고 각 소관부처 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안전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1) 소비자안전센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의 행정관서, 등록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및 병원,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기타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4항)⁹⁾

2) 소비자안전넷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위해정보 관련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소비자위해정보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평가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 소비자, 사업자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 어린이안전넷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만든 인터넷상의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이다. 어린이안전 관련 뉴스, 제도 및 정보, 법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국가표준, 공산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공산품의 법정 계량 및 측정, 신기술·신제품의 기술평가 및 인증 등을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국가표준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표준·제품안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지향형·성과중심형 책임 행정체계를 구현하고자 기존의 과단위의 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맺고 어린이 완구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시, 공고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공표, 제시하고 있다.

5)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체로서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가 있다.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1) 리콜제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어린이 완구에 대한 리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⁰⁾

소비자기본법상의 리콜제도로는 사업자가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5일 이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와 사업자 스스로 시정조치를 하는 “자발적 리콜”, 결함이 추정될 경우 정부(시,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신속하게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리콜권고”, 결함이 확인되면 정부(시, 도지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인 “리콜명령” 등이 있다.

2) 위해정보수집제도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위해정보제도라고 한다.¹¹⁾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 및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을 위해정보 보고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상 알게 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모니터,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례, 핫라인(080-900-3500), 해외정보, 기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집되고 있다.

수집된 위해정보는 사실 확인 조사, 위해정보실무위원회 및 위해정보평가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거나 사업자 지정, 안전기준 제·개정 및 소비자홍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¹²⁾

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우리나라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음

- 이중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은 각각 이에 대한 KPS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 작동완구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작동완구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강제인증임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판매중지, 개선, 수거, 파기 등의 조치

(1) KPS(Korea Product Safety)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7년 3월 24일부터 운영되는 공산품 안전 관리제도이다. 이전의 ‘검’, ‘안전마크’가 새로운 KPS 마크로 대체되어 2007년 3월 24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완구 등의 공산품에는 의무적으로 이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① 안전인증제도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큰 압력밥솥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율안전확인제도



제조(수입)자가 공인 시험, 검사기관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품검사로 소비자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 등 4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완구는 이 마크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다

③ 어린이보호포장제도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주의로 가정용 생활화학제품을 마시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후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신속조치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대상품목 이외의 공산품에서 신종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 및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⑤ 안전, 품질표시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종전의 권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품질표시제도를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표시 미필 제품은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 품질표시제도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14개 품목의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KPS 마크의 표기방법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표시해야 하고 신고필증번호, 공산품명 및 모델명 신고기관명, 신고일을 함께 표기한다.
 - 표면에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다량을 구입 직접 사용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에 표시한다.

III. 외국의 완구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책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1. 미국

1)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미국 연방의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972년 10월 27일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을 제정하였다. CPSA는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체계 내에서 법의 입법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CPSC의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안전정보 제공, 안전기준, 신제품, 검사, 수입품, 수출품, 민사별, 형사별,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³⁾

2) 어린이 완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과 지침

미국의 경우 어린이 완구와 그 외의 어린이 제품은 1960년에 제정된 연방위해물질법(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s)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법을 시행하는 기구는 CPSC이다.

(1) FHSAs의 제품안전기준

FHSAs는 완구와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강제규정과 자율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¹⁴⁾

○ 작은부품 사용금지(the prohibition of small parts)

3세미만 어린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품목은 작은부품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야 한다. 즉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졌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에 작은 부품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 날카로운 끝 기술기준(sharp point technical requirements & sharp edge technical requirements)

8세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는 날카로운 끝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 특수 경고표시규정(specific warning label requirements)

FHSA는 특정 완구와 게임에 대해 특수 경고표시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완구는 3세이상 6세이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작은부품을 포함한 완구와 게임, 3세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공과 구슬, 풍선 등이다.

- 납과 유해물질 금지

0.06%이상의 납을 포함한 물질로 칠해진 완구는 금지된다 (16 C.F.R. Part1303).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독소나 위험한 물질을 포함한 완구 또한 금지된다.

- 기타규정

FHSA의 제15조(c)는 강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CPSC는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위험을 창출할 하자가 있는 완구를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에게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다음 그 사실을 공지하고 수리 혹은 대체하거나 구매기를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CPSC 지침

주로 FHSA의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 완구의 제품안전기준 시행을 감독, 관리하는 CPSC는 완구가 FHSA의 강제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단일기관으로는 최대의 제품안전기준 제정 기관인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의 장난감 안전에 관한 소비자안전 세부기준(the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on Toy Safety, ASTM F963)규정¹⁵⁾ 도 모두 만족시켜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ASTM에 의해 제정된 표준은 전 미표준협회의 표준으로 채택된다. ASTM F963은 완구와 어린이 용품에 관한 CPSC의 강제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지만 CPSC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③ 위해정보수집제도

소비자안전 달성을 위해 위해정보 수집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제도이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1980년부터 전미위해조사전산망(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을 운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위해정보 수집의 모델이 되고 있다. CPSC는 미국 전역의 전체 5,300개 병원에서 추출된 100개 지정병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게 발생한 제품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토대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은 NEISS를 통하여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상해, 사망,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전파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EU

1) 유럽연합 준칙과 CE마킹

유럽연합의 소비자 제품안전기준은 유럽연합 준칙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연합 준칙은 소비자를 위하여 특정되었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전체로 일반적인 안전요구를 수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제품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제2절로서, 이에 따라 생산자와 상인에 의하여 유통되고 개인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제품이 안전해야 한다는 일반적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CE마킹 제도란 유럽연합이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킹을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CE 마킹은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인 안전 규격에 적합하다는 표시로서, 전기·전자제품, 완구, 압력용기,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유럽연합의 통합 인증마크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CE마킹을 부착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준칙(Council Directive) 93/68/EEC는 CE마킹과 적합성 평가과정, EC의 검증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어린이 완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과 지침

(1) 완구안전준칙(Toy Safety Directive: TSD 88/378/EEC)

유럽의 완구안전성은 유럽위원회의 완구안전준칙(TSD 88/378/EEC)에 의해 규제된다. 완구안전준칙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완구의 안전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⁶⁾

완구안전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강제 필수 요구사항의 정의
- 유럽합의기준의 준비
- 제조업체를 위한 적합성 평가과정의 정의
-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위해 회원국들이 적절한 실행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의무

완구안전준칙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완구가 완구안전준칙의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safety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완구들은 유럽합의기준(Harmonized European standards)에 따라 제조되거나, 아니면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제조업자에 대해 완구에 CE 표시를 부착하고 관련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8년 1월 25일 완구안전성에 대한 기존의 완구안전준칙을 개정하기 위한 계안서를 채택했다. 완구안전준칙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유럽위원회 안에서 2001년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인데, 회원국들과의 공동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③ 위해정보수집제도

RAPEX(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consumer products)는 유럽연합의 위해제품에 대한 긴급경보시스템이다. 회원국에 의해 규명된 위해제품의 시장에서의 판매금지와 제한을 목적으로 위해관련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에 신속히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모든 EU 국가와 EEA국가를 포함하여 30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RAPEX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의 일반제품안전준칙(The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2001/95/EC에 두고 있다. GPSD는 회원국의 역할과 의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⁸⁾

유럽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의 위해문제가 증가하자, EU와 중국 제품안전행정위원회간의 정규적이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004년 RAPEX-CHINA 시스템을 설립하였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위험경고를 받고 유럽시장에서 금지된 중국산 소비자제품에 대해 RAPEX 시스템을 통하여 유럽위원회에 보고된 정보를 중국당국에게 제공한다. 중국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시 알려진 위험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들인다. 또 중국당국은 이러한 검토의 결과들을 분기별로 유럽위원회에 보고한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 완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우리나라 어린이 완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외국(미국과 EU을 중심으로)에서 실행되고 있는 완구의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완구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비자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세법” 등의 관련법과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실행되고 있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시행되는 ‘공산품안전관리제도’는 미국 FHSA의 제품안전기준과 유럽의 완구안전준칙(Toy Safety Directive: TSD 88/378/EEC처럼 우리나라 완구의 안전마크의 활성화 및 품질표시 제도를 강화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위해정보수집시스템 또한 미국의 CPSC와 EU의 RAPEX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안전넷과 어린이안전넷,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은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출중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어린이 소비자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고려되어야 하겠다.¹⁹⁾

첫째, 어린이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있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해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어린이 안전 관련 법규, 제도의 정비 등의 체계적인 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안전법’ 제정 및 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소비자안전법 규는 부처별 소관부처가 다르므로 어린이 안전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과 같이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안전검사 품목 탄력적 운용

미국 CPSC 어린이 안전보호법과 같이 어린이용품 공통 안전기준과 개별품목별 안전기준 이원화가 필요하며 매년 별도의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계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미국 CPSC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매년 어린이 안전보호법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하여 연방안전관련규정에 통 내용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주의, 경고, 표시제도 강화

국내 공산품에 ‘경고’, ‘사용상 주의사항’, ‘취급 주의사항’ 등의 문구로 경고를 표시하고 있는데 글자형태 이외에 모형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시하여 경각심을 깨우칠 필요가 있겠다. 세계 표준화기구 등과 공조하여 적합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안전 국제협력체계 구축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National Safe Kids 와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어린이 완구에 대한 소비자안전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안전 관련 법 및 제도와 미국과 EU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 관련 법 및 제도를 고찰하였다. 소비자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린이 완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실태 및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EU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완구에 대한 소비자안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일 또한 추후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 1) "수입유아용완구 안전실태 조사", 2007, 한국소비자원.
 - 2) 영국 'The Times' Analysis : how toy recall affects Brand China(2007, 8, 14).
 - 3) "유아용 학습 목재완구 안전실태 조사", 2002, 한국소비자보호원.
 - 4) "어린이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2005, 기술표준원, 어린이안전네트워크, 대통령비서실 어린이안전점검단.
 - 5) 김영신(2007),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 6)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2006), 어린이용 장난감 안전기준 개정방안 연구.
 - 7)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2007), 수입유아용완구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 8) <http://www.kats.go.kr/>
 - 9) 김영신(2007),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 10) <http://www.isafe.go.kr/index.jsp>
 - 11) <http://www.isafe.go.kr/index.jsp>
 - 12) 김영신(2007),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p290
 - 13) 강창경(1997), 소비자안전법 비교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 한국소비자보호원.
 - 14) Toy Premium Guidance, www.cpsc.gov.
 - 15) www.astm.org
 - 16) The Toy Safety Directive, www.conformance.co.uk/directive/ce_toys.php.
 - 17) Study on the Impact of the Revision of the Council Directive 88/378/ECC on the Safety of Toys, <http://ec.europa.eu>.
 - 18)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consumer products (RAPEX), <http://ec.europa.eu>.
 - 19) "어린이안전전화 종합대책", 2003, 한국소비자원